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59호

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1. 서울시 종로구 고시 제136호(2019.11.7.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 결정 고시된 종로구 혜화동 23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-1188호('20.4.16) 로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. 저촉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,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.
3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(☎2133-266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6월 25일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개요

사업의 종류	사업의 위치	사업의 시행면적	사업내용
공공공지 조성사업	종로구 혜화동 23 종로구 혜화동 23-3	764.6㎡	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

나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 (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15)

다. 사업기간 :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 부터 2022. 12. 31까지

라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물건조서 : 별첨

※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도감과(☎2133-266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0호

봉천1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37호(2009.12.24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봉천1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「같은 법」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25일
서울특별시장

1.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내역

구 분	정비구역 명칭	위 치	면 적 (㎡)	정비구역 지정·고시일	일몰기한	비 고
당 초 변 경	봉천13주택재개발 정비구역	봉천동 922-1번지 일대	12,272.5	2009.12.24.	2020.3.2. 2022.3.2.	2년 연장

※ 2020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(2020.6.3.) 차문결과 : 조건부동의

- 대상지 내 무허가건축물이 다수 입지하는 바, 토지등소유자 해당 여부 등 관련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정관에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검토

2.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

3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203) 또는 관악구청 주택과(☎02-879-69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1호

노량진5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443호(2006.12.21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503호(2009.12.10.)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210호(2010.06.03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33호(2010.09.2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264호(2011.09.1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86호(2013.06.20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25호(2013.07.11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84호(2014.05.1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25호(2014.12.18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112호(2016.04.14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9호(2017.02.0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13호(2017.06.1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37호(2017.11.3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463호(2017.12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4호(2018.02.2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98호(2018.06.2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54호(2019.02.0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06호(2019.03.2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30호(2019.04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16호(2020.05.28)로 변경 결정된 노량진5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 제2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·고시하며, 같은 법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합니다.
2.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6월 25일
서울특별시